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4.

발 의 자 : 이해민 · 김선민 · 이학영
조인철 · 민병덕 · 정춘생
이정문 · 신장식 · 김준형
강경숙 · 황운하 · 안도걸
손명수 · 서왕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,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 초년생인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, 현행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91조의 19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
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